

과징금의 부과금액 및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1. 과징금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 부과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.
2.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른 유기식품등,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 가공식품,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(이하 "인증품"이라 한다)의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, 인증품의 판매금액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당시의 판매가격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3. 인증품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.
 - 가. 신용카드 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금융계좌의 이체 명세 및 거래처의 전산 자료 등 판매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: 해당 자료에 기재된 판매가격
 - 나. 판매가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등 판매가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가격
 - 1)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속하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인증사업자 3인이 판매하는 같은 인증품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평균한 가격
 - 2) 같은 인증품 품목을 판매하는 인증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속하는 시·군·구에서 해당 인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3인의 판매가격을 평균한 가격
 - 3) 1) 및 2)에 따라 판매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속하는 시·군·구의 판매자 3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가격을 평균한 가격에 그 평균가격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
4. 인증품의 판매량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이 속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적발일까지의 기간에 위반행위가 적발된 인증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 이 경우 판매량은 제3호가목에 따른 판매가격 증명 자료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실적 자료를 기초로 산출하되, 해당 자료로 판매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품목의 거래처 등을 방문하여 판매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.